

#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26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2020. 9. .

제안자 평창군수

## 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4조(위탁운영)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정시책 사업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대화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□ 관련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24조(어린이집 운영기준 등)
-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(위탁운영), 제15조(수탁자 선정), 제16조(위탁계약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## □ 위탁운영 목적

-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확보

## □ 시설현황

(단위 : 명, m<sup>2</sup>)

시 설 명	운영자	위 치	아동 정원	아동 현원	교직원	연면적
대화어린이집	이부녀	대화면 우전길 21	81	38	10	359.58m <sup>2</sup>

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현황

(단위 : 천원)

시 설 명	전환유형	사업비				비고
		계	국비	도비	군비	
대화어린이집	사회복지법인 리모델링	120,000	60,000	30,000	30,000	2회추경 반영

□ 인력관리 현황

(단위 : 명)

시 설 명	계	원장	보육교사	조리사	운전기사	기타 종사자
대화어린이집	10	1	6	1	1	1

□ 연간 예산지원 현황(2019년)

(단위:천원)

시 설 명	계	보육료	인건비	기타운영비	비고
대화어린이집	451,111	183,200	227,945	39,966	

□ 위탁계획

○ 대화어린이집 (가칭: 공립대화어린이집)

- 위탁사유 : 사회복지법인 ⇨ 국공립어린이집 전환
- 위탁기간 : 2020. 10. 01. ~ 2025. 09. 30.(5년)
- 위탁방법 : 기존운영자(사회복지법인)에게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권 위탁가능(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)

## □ 위탁조건

- 위탁범위 : 어린이집 운영전반(보육, 인사, 회계, 안전 등) 및 위탁시설 장비 등 유지·관리
- 예산지원 : 종사자 인건비, 보육료, 운영비, 기능보강사업비 등  
※ 단, 보건복지부 '보육사업지침'의 사업안내에 따른 단가 및 지원 비율에 의함.

## □ 향후 추진일정

- 평창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탁자 심의 : 2020. 9월
- 수탁자 선정 및 국공립 설치신고 : 2020. 10월
- 위탁운영 협약체결 : 2020. 10월

## □ 민간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

-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, 전문적인 지식,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,
- 아동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, 보육교직원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에 기여

## □ 관련자료

- 관련법령 1부. 끝.

소관 관·과·소		복지과
입	관·과·소장 직위·성명	복지과장 고 홍 재
안	담 당 직위·성명	아동청소년담당
자	(전 화)	박 영 선 (330-2180)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

제14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이 직접 시설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
③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- 다만,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 모집 제외한다.

④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시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15조(수탁자 선정)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**제16조(위탁계약)**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며,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## □ **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**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**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 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